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58
----------	-----

제출년월일 : 1999.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 지 이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정보공개청권자,청구인의 의무,비용부담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행정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폐지코자 함

☐ 주 요 골 자

“ 동 조례 폐지 ”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1996. 3. 1) 조례 제35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구현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것을 한다.
2.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85조, 제104조 내지 제107조, 제111조에 규정된 파주시 및 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진다.

②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것은 물론 지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4 조(공개대상 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2.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 사생활, 종교, 경력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행정집행기관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 입찰 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생송, 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합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합의 또는 의회에 의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하여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서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시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파주시에 주소권을 두고 있는자
2. 파주시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3. 집행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2. 공개 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3.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공개여부 결정) ①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

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사유, 구제절차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공개방법) ①집행기관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 9 조(청구인의 의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을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부의 등·초본 교부 및 공부열람 수수료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정보의 사본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 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 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 의원 3인과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3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하게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대의 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 14 조(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5 조(운영상황의 공표등) ①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상황 공표등 전담부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6 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정 보 공 개 목 록

행정정보(문서)의 명칭	처 리 기 간	업무주관부서	비 고

11

(별지 제3호서식)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접 수 번 호			결정내용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한 정보의 내 용				
비 공개 사 유 (다른절차에 의한 구 제 방 법)				
수 수 료				
공 개 일 시		공 개 장 소		
근 거 법 규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99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 ○ 귀하				

(참고) 귀하가 청구한 행정정보는 위 사유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1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파주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공개기일지연통보서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한 정보의 내 용				
지 연 사 유				
수 수 료				
공 개 일 시			공 개 장 소	
근 기 법 규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개결정이 지연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 ○ 귀하				

